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519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욱

피고E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세귀

피고보조참가인F

변론 종결2023. 3. 9.

판결 선고2023. 4.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26. 체결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301,616,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7,910,000원, 원고 B에게 77,910,000원, 원고 C에게 54,880,000원, 원고 D에게 90,916,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부동산개발 용역, 부동산매매 대행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1.경부터 서산시 H, 태안군 I 일대에 빌라·펜션단지를 개발하고, 당진시 J리 일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서산시, 태안군 사업의 투자자로서 G의 권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대상 토지를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G에 투자금 명목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람들이다.

1) 원고 A는 2015. 11. 14. G로부터 서산시 K 임야 396㎡ 중 175㎡을 79,5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감액된 금액인 77,91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는 2015. 11. 14. G로부터 위 같은 임야 396㎡ 중 175㎡을 78,97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감액된 금액인 77,91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C는 2015. 10. 21. G로부터 위 같은 임야 396㎡ 중 132㎡을 56,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감액된 금액인 54,88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 D는 2017. 11. 29. G로부터 서산시 L 임야 330㎡, 도로부지 26㎡을 80,200,000원에 매수하고, 위 지상에 캠핑용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건축공사계약을 28,000,000원에 체결하여, 그 대금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감액된 금액인 90,916,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G은 서산시, 태안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투자자 100여명으로부터 81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각종 용역을 진행하였으나, 위 투자금 외에 추가로 투자를 받지 못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고, 이에 G은 위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2019. 4. 25. 설립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게 위 사업권 및 투자금으로 매수한 사업용 부동산 등을 모두 양도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G은 2019. 5. 7. M과 사이에 당시 G이 추진하고 있던 당진시 사업인 'N 공공지구 민간임대주택사업'을 M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양수 및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양수도계약서의 이행을 위해 2020. 1. 23. M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양도행위'라고 한다).

마. M은 참가인에 대하여 상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20. 6. 18. 위 상환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참가인'으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20. 6. 18. 접수 제26301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21. 5. 26. 참가인으로부터 참가인의 M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이하 위 채권양수도계약을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이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G에 대하여 매매대금 반환채권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그런데 G, M은 G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공동담보에 제공되어야 할 G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M에 양도하고, M 및 참가인은 G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위 각 부동산들에 참가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참가인 및 피고는 G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확정채권양도를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은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이미 관련 사건(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가합50842호)에서 이 사건 양도행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확정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2019년경 G의 전·현직 대표이사 O, P, Q, R, 당시 G 본부장 S 등을 포함한 영업직 임원들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2020. 4. 14. 위 사람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S을 비롯한 G 전·현직 임원들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20. 1. 23. 이 사건 각 양도행위 당시에 G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법원 2021가합50842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에 의하면 2020. 4. 14. 위 사람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S을 비롯한 G 전·현직 임원들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G 임원들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존재와 G이 사해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양도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이 G 전·현직 임원들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가압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존재 및 이 사건 각 양도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 외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양도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존재와 G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양도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이 2021. 5. 26.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인 2021. 12. 16. 제기된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G의 M에 대한 이 사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미 각 지분에 대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위 가등기는 각 투자자들의 G에 대한 금전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도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최대 가액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존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M은 2020. 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M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을 G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이로써 G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을 G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은 피고 G의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확정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용찬

판사임동환

판사이두호

별지